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문백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7호·제8호 및 제9호, 16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생활지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설치 운영은 별첨 규정에 의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3.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③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3장 학생생활

##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교사 상담교사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532-3200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담당(상담)교사와 상의하여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및 특기 신장 활동,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학생들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소지품(음란물, 흡연 관련물, 향정신성 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016.2.12.추가)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만 인정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⑪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의 숙려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하되, 숙려기간 동안 학교 숙려제 프로그램에 성실히 수료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으

로 처리한다.

1.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를 밝힌 학생으로 한다.
2.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정하되, 해당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18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b>부, 모</b>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b>3</b>
	○ 부모의 형제.자매 <b>및 그의 배우자</b>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제19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이내인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6년간 결석일수가 2일 이내인 경우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드러나고,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

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 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③ 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4절 어린이회

**제26조【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1,2학기 구분)
2. 각부의 부장 1인

**제32조【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바른생활부: 교내외 생활지도, 질서지도에 관한 사항
2. 학예부: 교내외 행사 및 예능발표 학습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미화부: 불우돕기, 위문편지, 위문활동, 청소 미화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체육활동, 체육시설, 건강생활에 관한 사항

**제33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4조【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6학년), 부회장(6학년 1명, 5학년 1명)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6학년 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6학년 1명, 5학년 1명) 2명으로 부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제4장 학생생활 지도

### 제1절 생활지도

**제35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 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7조【흡연예방을 위한 조치】**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2. 전 교직원 및 학교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교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3. 모든 학생들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
4.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흡연예방 관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 2 절 선도 규정

**제38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올바른 학생의 선도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생활지도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원, 생활담당교사, 해당학급 담임으로 구성한다.
2. 교감은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선도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3. 생활지도위원회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의 운영을 통괄하며, 각 위원은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1조【훈육】**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훈육 지도한다.

**제4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3절 시상

**제43조 【종 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다양한 시상 제를 운영하되 내용에 따라 담임 또는 교직원회의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창의부문: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과학상) 등
2.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예절상 등
3. 근면부문: 6년 개근상, 6년 정근상, 1년 개근상
4.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4조 【시 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5조 【외부로부터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6조 【창의부문】**

- ① 체육상: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1. 개인: 교육부 산하기관 시. 군 또는 도 및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자
  2. 단체: 교육부 산하기관 시.군 또는도 및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자.
- ②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 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부 산하기관 시. 군 또는 도 및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자

③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부 산하기관 시. 군 또는 도 및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한자

**제47조 【모범부문】** ①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행실이 바르고 솔선수범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 예절상: 참되고 예절이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며 품행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 기타: 각 학급에서 모범학생을 수시로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48조 【근면부문】** ① 6년 개근상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하거나 결석,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②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하거나 결석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

③ 6년 정근상 : 6개년에 걸쳐 결석 3회 미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9회 미만인 자에게 수여한다.(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본다.)

**제49조 【특별상】** 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근면부문】** 각 학급에서는 학급 담임이 학급시상 종류를 정하여 담임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5장 개정방법

**제51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 의한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